

영등포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7. 5. 18



行 政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제안일 : 2007년 5월 11일
- 회부일 : 2007년 5월 14일

## 2 제안이유

- 동(洞)기능 전환이후 행정의 간소화 및 공동주택의 확대 등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장의 역할과 임무가 축소되어 관리범위의 확대가 필요하여 통·반장의 관할구역 범위를 조정하고, 통장 및 반장의 해촉권자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함.

### 3

### 주요내용

- 1개 통의 범위를 “6개반 내지 8개반”에서 “8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에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하여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로 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한다”로 개정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 통·반장 해촉권자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 행정구역 재편 및 통·반 조정에 따른 통·폐합이 있는 경우 위촉권자가 해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5조제4항제6호)
-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표기 (안 제7조제1항)
- 통·반장의 잡부금 면제 및 통장의 공과금 일부 면제 규정 삭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4

###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10쪽)

(2) 입법예고(2007. 4. 20 ~ 5. 9, 20일 간), 결과, 의견 반영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이 조례안은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에 대하여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반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반 획정 기준에 대하여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되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자행정이 구현되면서 민원수집이 주 목적인 전통적 통·반장 업무가 줄어드는 등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동의 세대수를 늘리고 통장의 연임제한과 연령을 줄이거나 검토 중인 실정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그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획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통·반의 규모를 거주형태에 따라 신축을 기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 1개통에 두는 반의 수를 현행 “6개반 내지 8개반”에서 “8개반부터 12개반”으로 확대하고 반의 규모를 단독주택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20가구부터 40가구로 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30가구부터 50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단독주택 지역에 비하여 통·반의 관리가 용이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각 구와 우리 구를 비교하여보면 우리구의 통수는 713개통이고 통별 평균세대수는 232세대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평균은 295세대이며 동의 규모인 세대수는 25개 구 중 22번째로 적은편입니다.

통·반 규모의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인구, 지역여건, 거주형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같은 생활권역 안에서 비슷한 여건을 가진 타 자치구의 현황을 별첨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사유가 있을 때 구청장이 위촉한 통장을 그리고 동장이 위촉한 반장을 구청장과 동장이 해촉 할 수 있어 위촉자가 해촉하도록 권한을 일치시켜 구청장은 통장을, 동장은 반장을 해촉 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안 제5조제4항제6호는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는 통·반장을 해촉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은 현재 재임 중인 통장의 임기는 보장받았으나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조정으로 통·폐합하여 해촉되는 경우에는 보장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2조제3항 중 “반”의 규모는 “20가구 내지 40가구”를 “20가구 부터 40가구까지 구성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의 개정은
  - 건축법령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하는데 그 중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반 가구 수만 50가구까지 확대할 특별한 이유 가 없고
  -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을 감안하고
  - 반장은 무보수 직으로 반상회 등 반 단위의 주민 모임이 거의 이뤄 지지 않고 반장을 맡으려는 주민도 다수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반의 가구수 증가는 반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 실내에서 반상회 등 반 단위의 주민모임을 할 공간도 고려하고
-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세대수를 가감할 수도 있다”는 사회통념 상 어느 정도의 차이를 “특수한 지역 사정”에 포함할 수 있는 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참고 1”과 같이 그 상·하한을 25% 이내로 할 때 현행조례에서는 반을 15가구부터 50가구까지, 개정안은 15가구부터 62가구까지도 운용할 수 있어 공동주택, 상가지역 등 특수한 지역은 상한선을 넘어서 또는 하한선 이하로 통·반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 이는 조례문항 중복으로 특별히 일반주택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을 구분하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만의 반 가구수 증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반 가구수 증가에 따른 비교

구분	현행(가구)	개정안(가구)
조례 기준	20 ~ 40	20 ~ 50
특수한 지역 사정 감안 15% 증가	23 ~ 46	23 ~ 57
특수한 지역 사정 감안 25% 증가	25 ~ <u>50</u>	25 ~ <u>62</u>
특수한 지역 사정 감안 15% 감소	17 ~ 34	17 ~ 42
특수한 지역 사정 감안 25% 감소	<u>15</u> ~ 30	<u>15</u> ~ 37

안 부칙제2항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인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  
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제490호(2001. 1. 9.)와 조례594호(2005. 5. 25.)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의 통장임기 조항을 두 차례 개정  
시행하면서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를 보장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 “해촉되어 다  
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은  
지금까지 조례에 의거 잔여 임기를 보장하였으나 해촉되는 통장은  
잔여 임기를 보장 받을 수 없어 이는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  
하여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으로 이미 성립한 상태에 대하여 조례가  
뒤에 규제를 가하여 그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해하고 통장들의 이익  
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소급적용은 일반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도 되나 “행  
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은 자치법규에도 지켜야 함으로, 민원을 사전  
에 예방하고 기존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칙에 재임 중인 통장을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  
합하는 때” “다시 위촉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조례 시행 후 위촉 통장의 잔여임기에 대하여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개정조문에 따른 비교

개정 조문	재임 중 통장		조례 시행 후 위촉 통장
	해촉	다시 위촉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 ----- 해촉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4항제6호)	잔여임기 미 보장 기득권자 미 보호	잔여임기 보장 기득권자 보호 (새로운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함)	임기 미 보장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 다시 위촉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 부칙 제2항)			미 규정

안 1)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되어 해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통·폐합일 전일까지로 하고, 다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2항(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 시까지 제5조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보호하고,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통장은 통·폐합 시 다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하여 기득권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으나 필요시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3] 개정조문에 따른 비교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되어 해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통·폐합일 전일까지로 하고, 다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③ (생략) ④ 1. ~ 5. (생략) 6. (신설)  6. (생략)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 5. (현행과 같음) 6.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 7.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1. ~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②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 시까지 제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2)

안 제5조제4항제6호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2항(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로 하여 현재 재임 중인 통장의 임기는 보장하도록 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 인위적으로 인원을 줄이기보다는 행정구역 개편, 재건축, 재개발, 통장 임기만료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연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나 필요 시 통·폐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4] 개정조문에 따른 비교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③ (생략) ④ 1. ~ 5. (생략) 6. (신설) 6. (생략)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 5. (현행과 같음) 6.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1. ~ 5. (개정안과 같음) (삭제) 6. (현행 제6호와 같음)
	<u>부 칙</u>	<u>부칙</u>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②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

-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안 제2조제2항 중 조례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1통”을 “통”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띄어 쓰고

제5조제2항제1호 중 “60세이하”를 “60세 이하”로 띄어 쓰고

제5조제4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하고

“부 칙”은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도록 되어 “부칙”으로 붙여 쓰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수정의견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5. 18

보고자 : 김 완 섭

- 붙임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자치구별 세대 및 통·반현황  
3. 통·반 설치 조례 타구 비교  
4.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5.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주요개정 현황  
6. 관련법규  
7. 수정의견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p>
<p>제2조 (통·반의 조직) ① (생략) ② 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 ③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p>	<p>제2조(통·반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8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 ----. ③ --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로 구성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 . ----, ----.</p>
<p>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 ② (생략) 1.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하의 주민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 ③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p>	<p>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해당 ---- 관할구역에 ----- ----- ----- ③ ----- 해당 ---- 관할구역에 ----- ----- . ④ 구청장은 통장을, 동장은 반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p>	<p>1. ~ 3. (현행과 같음) 4. ----- 일으켜 ----- -----</p>

현행	개정안
<p>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6.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p>	<p>5. (현행과 같음)</p> <p>6.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p> <p>7.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p>
<p>제7조 (임무) ① (생략)</p> <p>1. ~ 4. (생략)</p> <p>5. <u>주민복지센터</u> 및 새마을사업추진협조 지원</p> <p>6. ~ 9. (생략)</p> <p>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u>대행한다.</u></p>	<p>제7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주민자치센터</u> ----- -----</p> <p>6. ~ 9. (현행과 같음)</p> <p>② ----- ----- <u>대행할 수 있다.</u></p>
<p>제8조 (반사회) ① 반사회는 <u>반내에</u>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p> <p>② 반사회는 정기반사회와 임시반사회로 <u>구분</u> 개최한다.</p> <p>③ (생략)</p>	<p>제8조(반사회) ① ----- <u>반에</u> ----- -----.</p> <p>② ----- <u>구분하여</u> 개최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 (편의제공) 통·반장은 <u>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u>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제10조(편의제공) ----- <u>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u> ----- -----.</p>
<p>제11조 (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장에게 수당과 상여금을, 반장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p>

[붙임 2]

## 자치구별 세대 및 통·반현황

(2007. 3. 31기준)

구 분	면적(km <sup>2</sup> )	세대수	인구수	통·반현황		비 고 (통별평균세대수)
				통 수	반 수	
계	605.62	4,012,188	10,200,854	13,596	103,039	295
종 로	23.92	71,578	166,733	299	1,934	239
중 구	9.97	57,141	130,764	247	1,590	231
용 산	21.87	102,240	232,466	344	2,533	297
성 동	16.84	134,788	334,436	534	3,965	252
광 진	17.05	152,138	375,257	373	3,140	407
동대문	14.22	156,518	378,593	677	4,718	231
중 랑	18.51	165,001	426,548	536	4,041	307
성 북	24.55	186,445	472,225	583	4,041	320
강 북	23.58	135,118	348,422	390	3,300	346
도 봉	20.83	137,011	377,651	381	2,900	359
노 원	35.46	220,638	618,961	702	6,027	314
은 평	29.70	181,143	463,518	561	4,224	323
서대문	17.60	143,154	350,280	552	4,432	259
마 포	23.87	166,494	391,830	484	3,706	343
양 천	17.40	180,638	503,209	542	4,415	333
강 서	41.40	210,238	556,173	575	4,525	365
구 로	20.11	161,645	420,715	644	4,948	250
금 천	13.01	99,396	252,249	398	2,996	250
영등포	24.57	165,640	409,962	713	5,159	232
동 작	16.35	163,225	408,653	546	4,158	298
관 악	29.56	233,501	537,864	635	5,179	366
서 초	47.13	159,626	408,734	491	3,494	325
강 남	39.53	223,941	558,383	1,035	6,648	216
송 파	33.89	232,517	613,976	766	5,989	303
강 동	24.58	172,414	463,252	588	4,977	292

[붙임 3]

통·반 설치 조례 타구 비교

(2007.4.20)

연 번	자치 구명	통·반 구성			통장위촉사항		최근조례 개정일	비고
		통	공동주택단지	반	연령	연임		
1	중 로	6~10		20~60	30~65	2년, 연임가	04.11. 5	
2	중 구	6~10		20~60	30~65	2년, 연임가	99. 3. 2	
3	용 산	6~8		20~40	30~62	2년, 연임가	01. 3.15	
4	성 동	6~12		20~40	30~60	2년, 연임가	99.10. 6	
5	광 진	8~15		20~60	60이하	2년, 연임가	05. 7.15	
6	동대문	6~8		20~40	30~60	2년, 연임가	00.12.29	
7	중 량	6~8		20~40	60이하	2년, 연임가	01. 1. 1	
8	성 북	6~8		40~60	30~65	2년, 연임가	98. 9.14	
9	강 북	8~12		30~60	30~65	2년, 연임가	97.11.25	
10	도 봉	6~12		20~60	30~60	2년, 연임가	05. 5.17	
11	노 월	8~12		30~50	30~60	2년, 1회연임	99. 1.20	
12	은 평	6~8		20~40	30~65	2년, 3회연임	06.10.16	
13	서대문	6~11		20~40	30~63	2년, 2회연임	03.12.30	
14	마 포	6~8		20~40	30~65	2년, 2회연임	07. 3.22	
15	양 천	6~8		20~40	30~60	2년, 연임가	05. 5.16	
16	강 서	6~8		20~40	65이하	2년, 1회연임	06.11.21	
17	구 로	6~8		20~40	30~65	2년, 연임가	98. 5. 1	
18	금 천	6~10	180세대 이상 30~50가구	20~40	30~63	2년, 2회연임	04. 6.30	
19	영등포	6~8		20~40	60이하	3년, 1회연임	05. 5.25	
20	동 작	6~8		20~40	65이하	2년, 연임가	05. 5. 2	
21	관 악	6~12		20~50	25이상	2년, 2회연임	04.10.30	
22	서 초	6~12		20~60	30~60	2년, 1회연임	07.2.26	
23	강 남	6~8		20~40	30~60	2년, 2회연임	95.10.20	
24	송 파	6~20		20~60	19~64	2년, 1회연임	07.7. 1	
25	강 동	8~12		20~50	30~65	2년, 2회연임	06.11.22	

[붙임 4]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07년 1월말, 단위 : 명 / 세대

연번	동 명	인구수	남	여	세대수	통수	반수	통 별 세대수	반 별 세대수
계		409,319	206,690	202,629	164,975	713	5,152	231.4	32.0
1	영등포1동	16,013	8,044	7,969	6,223	21	172	296.3	36.2
2	영등포2동	5,786	3,537	2,249	3,554	15	110	236.9	32.3
3	영등포3동	11,917	6,065	5,852	5,032	22	137	228.7	36.7
4	여의도동	31,525	15,309	16,216	11,421	59	367	193.6	31.1
5	당산1동	20,733	10,457	10,276	8,764	36	266	243.4	32.9
6	당산2동	33,108	16,427	16,681	12,630	50	339	252.6	37.3
7	도림1동	8,021	4,080	3,941	3,581	17	131	210.6	27.3
8	도림2동	13,894	7,126	6,768	6,214	28	182	221.9	34.1
9	문래1동	15,540	7,813	7,727	5,715	24	157	238.1	36.4
10	문래2동	15,038	7,557	7,481	5,442	26	175	209.3	31.1
11	양평1동	16,169	8,239	7,930	6,597	28	210	235.6	31.4
12	양평2동	21,595	11,036	10,559	7,991	31	217	257.8	36.8
13	신길1동	21,538	10,881	10,657	9,662	42	323	230.0	29.9
14	신길2동	10,723	5,429	5,294	4,731	23	158	205.7	29.9
15	신길3동	20,854	10,480	10,374	8,368	36	255	232.4	32.8
16	신길4동	14,248	7,219	7,029	5,773	27	197	213.8	29.3
17	신길5동	17,826	9,084	8,742	7,453	33	233	225.8	32.0
18	신길6동	25,205	12,629	12,576	9,781	43	351	227.5	27.9
19	신길7동	20,271	10,123	10,148	7,683	30	210	256.1	36.6
20	대림1동	19,074	9,701	9,373	7,845	28	230	280.2	34.1
21	대림2동	19,238	9,672	9,566	8,351	36	308	232.0	27.1
22	대림3동	31,003	15,782	15,221	12,164	58	424	209.7	28.7
					단독주택 112,257(68.0%) 공동주택 52,718(32.0%)				

## [붙임 5]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주요개정 현황

기 간	1988.5.1 ~ 1990.3.23	1990.3.24 ~ 2001.1.8	2001. 1. 9 ~ 2005.5.24	2005. 5. 25 ~ 현재
통장연령	·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 30세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60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	· 60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 ·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
통장 임기, 연임	· 임기, 연임조항 없음	·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통·반조직	· 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 ·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통·반장 임무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01.1.9> 4. 각종 시설 확인 5. 주민복지센터 및 새마을사업추진협조지원 <개정 2001.1.9>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법규

###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략)

⑤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 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 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⑨ (생략)

##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② ~ ③ (생략)

[붙임 7]

## 수정의견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통·반설치 조례</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 ----- ----- ----- -----.</p>	<p>제명: (개정안과 같음)</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 (통·반의조직) ① (생략)</p> <p>②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p> <p>③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p>	<p>제2조(통·반의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8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p> <p>③ --- 20가구 부터 40가구까지로 구성하 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 구부터 50가구까지로 ----- -----.</p>	<p>제2조(통·반의조직)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통-- 8개 반부터 12 개반까지로-----.</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p> <p>②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60세이하의 주민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p> <p>2. ~ 3. (생략)</p> <p>③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p>	<p>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①(현행과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해당 ----- 관할구역에 ----- -----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③ ----- 해당 ----- 관할구역에 ----- -----.</p>	<p>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①(개정안같음)</p> <p>② ----- 각 호 ----- ----- -----.</p> <p>1. 해당 ----- 관할구역에 ----- 60세 이하 ----- -----</p> <p>2. ~ 3.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p> <p>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6.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p>	<p>④ 구청장은 통장을, 동장은 반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일으켜 -----</p> <p>5. (현행과 같음)</p> <p>6.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5. (개정안과 같음)</p> <p>6.</p> <p>7. 그 밖에 -----</p>
<p>제7조 (임무) ① (생략)</p> <p>1. ~ 4. (생략)</p> <p>5. 주민복지센터 및 새마을사업추진협조지원</p> <p>6. ~ 9. (생략)</p> <p>②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주민자치센터 -----</p> <p>6. ~ 9. (현행과 같음)</p> <p>② -----</p> <p>----- 대행할 수 있다.</p>	<p>제7조(임무)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 (반사회) ①반사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p> <p>②반사회는 정기반사회와 임시반사회로 구분 개최한다.</p> <p>③ (생략)</p>	<p>제8조(반사회) ① ----- 반내 -----</p> <p>-----.</p> <p>② ----- 구분 하여 개최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반사회) (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 (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제10조(편의제공) -----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p> <p>-----.</p>	<p>제10조(편의제공)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 (실비수당 등)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실비수당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에게 수당과 상여금을, 반장</p>	<p>제11조(실비수당 등) (개정안과 같음)</p>

<p>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① (시행일) (개정안과 같음)</p> <p>②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p>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인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자구정정 내역

구분	자구정정 전	자구정정 후
제5조제2항	<u>각호</u>	<u>각 호</u>
제5조제2항 제1호	<u>60세이하</u>	<u>60세 이하</u>
제5조제4항 제7호	<u>기타</u>	<u>그 밖에</u>